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08다10884 제3자이의

원고, 상고인 원고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

피고,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황진호 외 4인

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8. 1. 24. 선고 2007나15561 판결

판 결 선 고 2009. 12. 24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에 대 하여는 그 회원권 자체 또는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예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(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 다카19606 판결 참조),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,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대로 회원권 양도·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,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.

2.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,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뿐 제3자에 대하여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집행의 선후에 따라 그 효력에 우열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어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,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골프클럽 운영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니,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자는 여전히 소외 2라 할 것이고, 비록 이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원고가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

집행권원인 승소판결을 얻어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.

3. 그런데,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,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 을 양도받았다 하여 1998. 1. 6. 소외 1 주식회사에 그 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,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1 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, 원고는 1998. 1. 9. 같은 지원으로부터 "① 채무자 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. ② 제3채무자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, 예탁금 의 반환 기타 일체의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"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고, 그 결정이 1998. 1. 13. 소외 1 주식회사에 송달된 사실, 한편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98카합 601호로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, 1998. 1. 30. 같은 법원으로부터 '제3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거나 예탁 금의 반환, 명의개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'는 내용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 고, 그 결정이 1998. 2. 12. 소외 1 주식회사에 송달된 사실, 소외 1 주식회사는 1998. 2. 15. 소외 2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신청 및 원고의 입회를 승인하고, 1998. 2. 18. 원고로부터 소정의 가입금 내지 회원등록료를 받고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 를 소외 2에서 원고 앞으로 변경한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소 외 2를 상대로 같은 법원 98가합728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. 4. 29. 전 부승소 판결을 받았고,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,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 여 2005. 7. 1. 같은 법원 2005타채4003호로 청구금액 1,467,582,297원으로 하여 이 사건

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을 한 사실, 피고는 2005. 7. 11. 같은 법원으로부터 '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앞서 가압류한 5억 원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906,582,297원 부분은 이를 추가로 압류한다'는 내용의 압류 명령을 얻은 사실,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. 8. 21.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앞으로의 위 명의변경을 철회한 사실,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소외 2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4009호로 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. 1. 13.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, 그 판결이 2006. 2. 15. 확정되자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. 2. 19. 원고의 명의변경신청을 다시 승인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가소외 2에서 원고 앞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.

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에 송달된 이후에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소외 1 주식회사에 송달되었기 때문에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그 순위에 있어서 앞서게 되고, 그 후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·양수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승인까지 받은 이상, 피고는 그 효력 순위에서 뒤지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 등을 가지고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.한편,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, 원심판결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4.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박시환 _	
	대법관	안대희 _	
주 심	대법관	차한성 _	
	대법관	신영철 _	